산학협력단 운영규정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학칙과 국민대학교 산학 협력단(이하 "협력단"이라 한다)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협력단의 조직과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본교의 산학협력사업을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·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조직 및 직무

제3조(단장) 단장은 대학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제4조(조직구성 및 업무) ① 협력단에 산학재무팀, 산학지원팀, 산학협력팀, 연구기획팀, 연구관리팀을 둔다. <개정 2015.12.28., 2020.02.01.>

- ② 상기 팀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, 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속 교직원을 지휘,감독한다.
 - ③ 각 팀별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.
 - 1. "삭제" <2015.12.28.>
 - 1의2. 산학지원팀 <신설 2015.12.28.><개정 2020.02.01.>
 - 가.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인사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 - 나. 산학협력단 소속직원 4대 보험에 관한 사항
 - 다. 산학협력단 물품검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라. 산학협력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마. 산학협력단 법인 인감 관수에 관한 사항
 - 바.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
 - 사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 - 1의3. 산학협력팀 <신설 2015.12.28.>
 - 가.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종합 기획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 - 나. 산학연 협약에 관한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다.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 및 센터 설립에 관한 사항
 - 라.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마.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
 - 바. 학교기업 및 기술지주회사 등 보유기술 사업화에 관한 사항

- 사. 산학협력단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아.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
- 자.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사항
- 차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- 1의4. 산학재무팀 <신설 2020.02.01.>
 - 가. 산학협력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나. 산학협력단 수입·지출 및 세무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
 - 다. 산학협력단 간접비 산출에 관한 사항
 - 라.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 - 마.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
 - 바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- 2. "삭제" <2015.12.28.>
- 2의2. 연구기획팀 <신설 2015.12.28.>
- 가. 국가 R&D사업 등 외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나. 외부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제도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다. 외부 연구동향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
 - 라. 외부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 - 마. 외부 연구비 관련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
 - 바. 외부 연구비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사. 연구진흥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- 아. 연구과제 인프라(공간, 시설물 등) 및 업무지원(대응자금 등)에 관한 사항
 - 자.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
 - 차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 - 2의3. 연구관리팀 <신설 2015.12.28.>
 - 가. 교내 연구관리 및 학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나. 국가 R&D사업, 산학연 협약사업 등 외부 연구과제 협약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
 - 다. 외부 연구과제 관리 및 연구비 집행·정산에 관한 사항
 - 라. 외부 연구과제 사전감사에 관한 사항
 - 마. 연구인력 임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바.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
 - 사. 교내 우수연구센터사업에 관한 사항
 - 아. 교내 연구비 관련 제규정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 - 자.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

- 차. 연구유리에 관한 사항
- 카. 연구보안에 관한 사항
- 타.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
- 파. 산학협력단 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
- 하. 기타 연구관리에 필요한 사항
- 거. 팀내 비품관리에 관한 사항
- 너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
- 제5조(사업단, 센터 및 학교기업) 본교의 산학협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단 산하에 별도의 사업단, 센터 및 법에 의하여 학교기업을 둘 수 있으며 각 사업단, 센터 및 학교기업의 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5.12.28.>

제 3 장 운영위원회

- 제6조(운영위원회) 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운영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7조(구성 및 임기)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과 임명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,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제8조(위원장)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보하며 회무를 총괄하고,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제9조(위원회 간사) 간사는 산학재무팀장으로 보하며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. <개정 2015.12.28., 2020.02.01.>
- 제10조(위원회의 소집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 의장이되다.
 -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도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11조(의사정족수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협력단의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일전까지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보며 시행일 이전에 적용하던 세칙은 폐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직제개편에 따른 제4조는 2015년 11월 16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직제개편에 따른 제4조는 2020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.